

제25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 합니다.

2016. 5. 16.

임실군의회의회장

1. 개정이유

수요응답형 마을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탑승자 요금을 단일요금 시행에 따른 요금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탑승자 요금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4항)
 - 1인당 1,200원 → 일반인 1,000원, 초·중·고생 500원

3.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 등 :
 - 1) 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16. 3. 23. ~ '16. 4. 14.)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관련규정 발췌문 : 붙임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1인당 1,200원”을 “일반인 1,000원, 초·중·고등학생은 500원”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수요응답형 마을버스의 운행방법 등) ① ~ ③ (생략)</p> <p>④ 수요응답형 마을버스의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u>1인당 1,200원</u>으로 한다.</p>	<p>제6조(수요응답형 마을버스의 운행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일반인 1,000원, 초·중·고등학생은 500원</u>--.</p>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소용비용계획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3. 미첨부 사유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 1호에 따라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가 해당없음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지역경제과장 박택수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전북임실018		
정책명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지역경제과	
	담당자명	신현정	전화번호 063-640-257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3월 29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지역경제과)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탑승자 요금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4항) - 1인당1,200원→일반인1,000원, 초·중·고생 500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03월 31일			
주 민 복 지 과 장 (담당자/연락번호 : 윤진/063-640-2123)			
지역경제과장 귀하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